☐ 수정(안)

현 행	김애실 의원(안)	인권위 수정 의견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생략) ②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4인(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신 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국회·대통령 및 대법원장은 인권위원을 선출 또는 지명할 때는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생략) ④(생략) ⑤위원중 4인 이상은 여성으로 임명한다.	③(현행과 같음) ④(현행과 같음) ⑤위원중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현행과 같음) ⑤(현행과 같음) ⑥위원중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은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선출 또는 지명시** 어느 한 성(性)도 국회는 4인중 2인, 대통령은 4인중 2인, 대법원장은 3인중 2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⑥(생략)	⑥(현행과 같음)	⑦(현행과 같음)

13. 성희롱의 정의(정부제출안)

▢ 개정안 보완

정부안	인권위 수정 의견
제2조제5호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제5호**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수치심, 혐오감,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 또는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 사 유

○ '성희롱'에 관한 정의에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는 경우로 규정한 것과 관련, 굳이 성적인 것에 한정할 필요가 없고 수치심을 포함하여 그 개념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수치심, 혐오감, 굴욕감'으로 수정

○ 또한,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 '불이익'의 유형은 고용을 포함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것이므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불이익'으로 수정

개인정보침해시정기구 인권위 일원화

14. 개인정보침해시정기구 인권위 단일화(이은영 의원안)

▢ 개정안 주요내용

○ 위원회에 5인의 정보위원으로 구성된 개인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

○ 위원회의 업무에 개인정보 조사·구제업무 신설(제19조제9호의2)

○ 조사대상에 개인정보침해 사항 규정(제30조제1항제3호)

▢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의견

○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인권위 수행여부 결정 필요

○ 개인정보침해에 관한 규정 불명확(제30조제1항제3호)

○ 개인정보에 과한 인권위 업무를 명확히 규정필요(제19조제9호의2)

▢ 인권단체 및 학계의 의견

○ 인권단체 및 학계 등 관련 전문가들은 인권위에 개인정보침해 시정기구의 설치에 반대 입장

▢ 검토 의견

○ 현행 인권위법상 공공부문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시정은 인권위의 업무로 규정(제30조제1항제1호)되어 있고 실제 개인정보침해시정을 위한 권고도 수차례 실시한 바 있음

○ 이은영 의원(안)에 의하면 이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하는 것으로서, 적정한 인력과 예산이 반영된다면, 충분히 수행 가능

○ 그러나, 인권단체에서는 독립된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설립을 원하고 있고, 외국의 사례에서도 개인정보보호기구를 별도 독립된 기구로 설립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개인정보보호기능을 총괄하는 독립된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따라서, 개인정보침해시정기구 인권위 일원화과 관련해서는 2개의 검토(안) 마련(붙임 참조)

- **제1안 : 개인정보침해시정기구의 인권위 일원화**
- **제2안 : 독립된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설립**

V. 추가개정 사항 검토

1. 위원장 궐위시 직무대행자 지정

○ 개정(안)

제6조(위원장의 직무)②위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다른 기관의 경우

- **부패방지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 현재 인권위법 규정과 같음
- **방송위원회**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순서에 의하여 그 권한을 대행한다.
- **대법원** :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 **감사원** : 감사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재임기간이 동일한 감사위원이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사 유

- 위원장의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궐위된 경우에 대비하여 위원장의 직무대리에 관한 규정을 보완함

2. (가칭)인권교육원 설치(제26조제7항 신설)

○ 개정안(신설)

제26조(인권교육과 홍보)①~⑥(생략)

⑦위원회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예방에 필요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을 둘 수 있다.

○ 사 유

-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인권교육 실시를 위한 인권교육기관 설치 근거 마련

※ (가칭) 인권교육원 교육계획 : 30개과정 10,000명

※ 외국의 사례

- 필리핀 : 인권교육지원센터 및 인권정보센터(주요도시 및 지역별 설치)
- 일본 : 인권교육계발추진센터(1997년)
- 오스트리아 : 인권교육서비스센터(1997년)
- 프랑스 : 국가인권교육훈련위원회 및 인권정보훈련센터(1996년)

※ 한국의 사례

- 통일교육원 : 38개과정 13,700명
-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 116개 과정 16,570명
- 서울특별시공무원연수원 : 169과정 25,984명 교육

3. 인권자료실을 인권도서관으로 개칭(제27조 개정)

○ 개정안 : 인권자료실→인권도서관

○ 개정사유

- 사실상 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자료실이라는 명칭의 한정적인 이미지로 대국민 서비스 측면이 부각되지 못함
- 인권자료실의 기능 및 목적에 걸맞고 일반인에게도 쉽게 인식될 수 있도록 인권전문도서관으로 명칭변경 필요

※ 도서관 설립요건

구분	도서관 설치 기준	현 자료실 현황	비고
열람실 면적	165㎡(50평)	55㎡(17평)	
전분분야 자료	3천권 이상	12천권 이상	
사서직원	3인이상	5인	

※ 도서관및독서진흥법(제5조 및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제3조 및 제4조)

4. 괴롭힘(harassment)을 차별행위 포함(제30조제2항)

○ **필요성**

- 괴롭힘(harassment)은 실제 성별, 장애, 종교 등 여러 사유로 다양한 영역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차별행위임
- 현재 인권위에서 추진중인 차별금지법(안)에는 괴롭힘을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인권위법에 근거규정 마련 필요

○ **(가칭)차별금지법(안)의 괴롭힘 규정**

- **차별의 개념**에 **괴롭힘**을 포함(제2조제3호)
- **금지대상 차별의 범위**를 성별 등 여러 사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우대·분리·구분·제한·배제 또는 **괴롭히는 행위**'로 하여, 인권위법상의 의미를 확대함(제3조제1항)
- 이하 각론에서 성적지향, 장애를 이유로 한 **괴롭힘**을 차별행위로 규정(제14조, 제15조)

※ 제2조(차별의 정의) 이 법에서 차별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을 야기하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인 가해행위

※ 제3조(금지대상 차별의 범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이유로 하여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분·제한·배제 또는 **괴롭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 4. : 고용, 재화 등, 교육기관, 법령·정책집행 등의 영역에서 적용

※ 제14조(성적지향에 의한 차별) ①
4. : 제1호 내지 제3호(고용, 재화 등, 교육기관)와 관련하여 성적지향을 기준으로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을 야기시키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가해행위를 하는 경우

※ 제15조(장애에 의한 차별) ①
② 장애인에 대한 금지된 차별행위는 제3조제1항 각호 영역을 포함하여 일상생활, 수사·재판절차, 행정서비스, 방송 영역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한 분리·제한·배제 또는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 **해외사례**

- 성희롱 또는 성적 괴롭힘(sexual harassment)에 관한 규정은 많으나 모든 분야에서의 괴롭힘(harassment)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사례는 그리 많지 않음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에서는 '어떤 인종이나 특정 피부색 또는 특정 종족에 대한 인종적 증오와 차별을 금지'하고 '폭행 또는 신체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인간의 안전 및 보호를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 **호주의 차별금지법**(제20조제1항b) : "특성(attribute)을 근거로 한 괴롭힘(harassment)"을 차별행위로 규정

- **캐나다 인권법** [14(1)] :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물건, 용역, 편의시설의 제공, 상업적 가치를 지닌 건물 및 주거시설의 제공, 또는 고용과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 금지된 차별사유를 근거로 하여 개인을 괴롭히는(harass) 것"은 차별행위로 규정

- **미국** 시민법, 장애인법, 고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법 등에 기초한 판례에서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출신국, 장애 또는 나이 등을 이유로 괴롭히는 것"을 차별행위로 봄

○ **검토의견**

- 괴롭힘을 차별행위로 규정하여 인권위 업무에 포함하기에는 그 사유 및 영역이 너무 광범위하므로

- 인종, 피부색, 종족, 장애, 성적지향 등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괴롭힘을 차별행위로 규정하거나,

- 현재 추진중인 (가칭)차별금지법이 제정된 후 좀 더 검토를 거쳐 인권위법에 근거규정 마련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개정(안)

현 행	인권위(안)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생략) ②"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종교.....병력을 이유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생략) 1.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재화·용역....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3. 교육시설.....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신 설>	제2조(정의) 1.~3.(생략) 4.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종교.....병력을 이유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현행과 같음) 가.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용역....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교육시설.....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라. 성희롱 행위 《제1안》:영역없이 모두 적용 마. 특정한 사람에 대하여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을 야기하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인 가해 행위 《제2안》: 일정영역에 한하여 적용 마. 위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고용,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에 대하여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을 야기하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인 가해 행위 ※ 30조제2항은 삭제(정부안 참조)

5. 차별행위에 대한 고용주 입증책임 신설(제30조제2항)

○ 개정안(신설)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①~②(생략)

③제1항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이 고용과 관련될 경우 분쟁해결에서의 입증책임은 고용주가 부담한다.

③~④→④~⑤으로 변경

○ 사 유

- 채용 또는 근로관계에서 차별사안의 경우 직접적으로 차별임이 드러나지 않는 간접차별이 늘어나고 있고, 차별입증에 있어 고용주가 더 많은 정보를 소유하고 있어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당사자가 차별임일 증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 남녀고용평등법 제30조에는 차별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남녀고용평등위원회가 폐지되고 동 업무가 인권위로 이관될 예정임에 따라 인권위법에도 동 사항을 규정할 필요

6. 진정 각하대상 일부 삭제(제32조제1항제8호 삭제)

○ 개정안(삭제)

제32조(진정의 각하 등)①----

8.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삭제>**

○ 사 유

-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별도의 각하절차 없이도 행정처리가 가능해야 함에도
- 매번 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회가 각하를 함으로써 행정력 낭비 초래 해소(업무처리 간소화)

7. 합의종결 규정 신설(제40조의2 신설)

○ 개정안(신설)

제40조의2(합의 종결 등)①진정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 없이 종결처리 할 수 있다.

1. 당사자가 원만히 합의한 경우

2.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 종결한 사건에 대하여 진정인이 다시 진정할 경우 각하 처리한다. 다만, 피진정인이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는 진정의 원인이 된 행위가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사자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을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할 수 있다.

○ 사 유

- 합의종결은 당사자의 평화적 해결방식으로 상호 만족도가 매우 높으나, 조사구제규칙에 절차만 규정되어 있고 법에는 근거가 없음
- 조사관 연구모임에서 1년간 토의를 거쳐 결론에 이르고 직원전체모임에서 발표

※ 합의종결 사례 : 경찰관이 욕설과 반말을 하여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는 진정의 경우, 경찰관이 진심으로 사과하는 선에서 합의(종결)

8. 조정위원 자격 완화 : 현행 10년→7년(제41조제3항각호 개정)

○ 개정안

제41조(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③----

1.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국가기관 또는 민간단체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10년→7년 이상 종사한 자
2.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의 직에 10년→7년 이상 종사한 자
3.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7년 이상 종사한 자

○ 사 유

- 위촉 조정위원의 자격이 너무 엄격하여 실제 관련 전문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자격요건 완화 필요

9. 위원회의 책임면제(제55조의2 신설)

○ 개정안(신설)

55조의2(위원회의 책임면제) 위원회와 인권위원, 위원회의 공무원 및 위원회의 위촉 또는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감정인 또는 민간단체 및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작성, 공개된 보고서 또는 공표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일체의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사 유

-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이유로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권고(의견표명)의 권한을 가진 인권위의 독립성 훼손 및 구성원 등의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작성, 공개된 보고서 또는 공표내용에 관하여 인권위 구성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유엔에서 발간한 "인권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가기구 설치와 강화 관련 안내서(1995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에는 독립성 확보를 위해 국가인권기구 구성원들이 공적으로 수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제받도록 하고 있음

※ 인권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가기구 설치와 강화 관련안내서(A Handbook on the Establishment and Strengthening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1995,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78. 국가인권기구의 구성원들에게 적용되는 조건들은 설립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설립법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조건들이 명시되어야 한다.

- 임명방법, 임명기준, 임기, 재임여부, 해임권자 및 해임사유, **특권과 면책**

81. 국가인권기구 구성원들에게 일정한 특권과 면책을 부여하는 것도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또 하나의 법적 장치이다. 특권과 면책은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을 받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구들에게 특히 중요하다. 국가인권기구의 구성원들은 공적으로 수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제**받아야 한다.

-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당시 민주당 및 공대위(국가인권위원회 설립공동대책위원회/인권시민단체로 구성)에서 발의한 법안에는 책임면제조항에 반영되어 있었으나(정부안은 미반영), 법안 심의과정에 삭제되었음

10. 기 타

○ **사법경찰관리**에 관한 정의(제2조제2호나목)

- 개정안 : 사법경찰관리→사법경찰관리(특별사법경찰관리 포함)
- 사 유 : 사법경찰관리는 일반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있으므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포함됨을 명시

○ **시설 방문조사** 대상기관(제24조)

- 개정안 : 시설방문조사 대상기관을 구금·보호시설→구금·교정 및 보호시설과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자(병역법 제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환복무자를 포함한다)의 근무시설로 개정
- 사 유 : 군부대에 대한 방문조사 실시 근거 마련

※ 병역법 제2조(정의)①

7. "전환복무"라 함은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사람을 교정시설경비교도 전투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의 임무에 종사하도록 그의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 **전과**에 대한 용어 수정(제30조제2항 본문)

- 개정안 :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전과
- 사 유 : 인권위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는 그 범위가 매우 협소하여 이를 보완하여 전과에 의한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하고자 함

※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9가지)

○ **과태료** 규정 보완(제63조제1항제3호)

- 개정안 : 정당한 이유없이 제22조제1항,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 등의 제출 요구 및 사실조회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 등을 제출한 자

- 사 유 : 현행 과태료 규정은 진정사건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불응한 경우 및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어, 진정이 제기되지 아니한 의견조회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재 방법이 없으므로, 현행 규정을 추가 개정할 필요

Ⅵ. 향후 추진계획

□ 추진 원칙

○ 정부제출(안)은 차별시정기구 인권위 일원화에 따를 실질화·전문화를 위한 최소한의 법개정이므로 반드시 반영

○ 의원 발의안의 경우 최재천 의원(안)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

- 개정(안) 중 검토결과 수정이 필요하거나 현행유지가 필요한 부분은 최재천 의원에 인권위 의견 개진

○ 추가개정(안) 반영 협의

□ 추진 계획

○ 위원회 최종 입장정리(4월 초)

- 사무처 논의를 거쳐 전원위 상정후 확정

○ 법사위원과 체계적 접촉(3월 하순~4월)

- 설명회, 간담회 등

○ 법사위 심의과정에 의견 개진(4월)

- 법사위 전문위원 심의, 법사위 소위 및 전체회의 심의 등

○ 국회 통과(4월)

- 인권위법 개정안을 최우선 심의(처리)대상으로 선정 추진

붙임 : 개인정보침해시정기구 인권위 일원화 검토 1부. 끝.

《붙 임》

개인정보침해시정기구의 인권위 일원화 검토(수정안)

2005. 4. 6(수)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침해시정기구의 인권위 일원화 검토

Ⅰ. 검토 배경

□ 최근 개인정보침해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공공·민간부문을 통합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과 별도의 독립된 보호기구를 설립할 필요성 대두

□ 이에 따라, 노회찬 의원(2004.11.22), 정성호 의원(2005.2.1), **이은영 의원**(2005.2.2)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개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 중임

□ 이 중 노회찬 의원(안) 및 정성호 의원(안)은 별도의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반면, **이은영 의원(안)**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침해시정기구는 인권위에 설치하고, 정책 및 규제기능 등은 현행대로 정부부처에서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함

○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은 인권위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 별도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2005.2.2)하여 인권위에 **개인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참고사항 : 용어사용 범례

○ **개인정보보호기구**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정책, 행정적 관리·감독, 판정·구제 및 실질적 집행력 등을 보유한 기구

○ **개인정보침해시정기구**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판정·구제(권고)기능 보유

Ⅱ.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기구 현황 및 문제점

1.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률 현황

□ 공공부문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행정자치부)

□ 민간부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부)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재정경제부)

○ 금융실명제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재정경제부) 등

2. 개인정보보호기구

□ **공공부문 :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총리소속)**

○ 근 거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 구 성 : 10인이내(위원장 : 행정자치부 차관)

○ 운 영 : 행정자치부(전자정부국 전략기획과)

○ 기 능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선 등

≪문제점≫

○ 침해시정기능 보다는 주로 제도,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운영도 연 1회 정도 개최하여 사실상 공공부분에 대한 침해 기능 수행 곤란(진정은 주로 민원사항으로 접수·처리)

○ 담당인력도 2명 정도에 불과

※ **행정자치부의 역할 및 권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요구, 의견제시 또는 권고

□ **민간부문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설 치 : 정보통신부 소속
- 근 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33조
- 구 성 : 15인 이내의 위원(1인 상임, 정통부장관이 위촉, 위원장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
- 운 영 : 한국정보보호진흥원내에 사무국 설치(5여명)
- 기 능 : 인권위의 조정기능과 유사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설 치 : 한국정보보호진흥원내에 설치
- 운 영 : 전자거래보호단내 개인정보보호팀에서 운영(20여명)
- 기 능 : 고충처리 및 상담, 자문 및 지원, 대책연구, 교육홍보, 진정사건 분쟁조정위원회 상정 등(연간 약 3천여건 처리)

※ 정보통신부 담당인력 : 정보화기획실 정보이용보호과에서 담당(10여명)

≪문제점≫

○ 개인정보보호기구가 갖추어야 할 독립성, 전문성 결여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아우르는 강력한 권리구제기관을 요청하는 국민들의 기대에는 크게 미흡

※ 개인정보침해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한국정보보호진흥원)

조 치 내 역		2000	2001	2002	2003	2004
신고 처리	시정권고(자체시정)	35	291	269	4,336	742
	분쟁조정위 이관	-	-	727	652	1,210
	위법사실통보 (정통부)	267	64	3	12	9
	수사의뢰 (경찰청)	2	3	1	60	47
	신고철회	25	13	128	87	81
	사실확인 불가능	-	17	56	75	144
	조사 결과 법 위반 사항 없음	-	-	53	211	92
	기타(사실확인중 등)	-	-	-	-	87
	소 계	329	388	1,237	5,433	2,412
상담·법률자문 등		1,706	10,776	16,719	16,152	20,624
합 계		2,035	11,164	17,956	21,585	23,036

▢ 현행 인권위법상 인권위의 개인정보침해 구제 업무

○ 현행 인권위법상 공공부문에 대한 개인정보침해 시정기능(권고)은 위원회의 업무로 되어 있음(법 제30조제1항제1호)

※ 인권위법 제30조제1항제1호(위원회의 조사대상)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로 되어 있어,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제18조(통신의 자유)에 규정된 개인정보침해구제는 인권위 소관사항임

○ 사 례

- 2002.7월 경찰청 등에 운전면허수시적성검사 관련 권고
- 2003.7월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개선 권고
- 2004.4월 지방자치단체 등에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 관련 정책개선권고 등

Ⅲ. 개인정보보호관련 국제동향 및 외국 사례 검토

□ 공공·민간부문의 통합 여부

○ 통합의 필요성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정보는 그 침해의 위험성, 성격, 종류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 정보처리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민간부분이 급속하게 발전하여 공공과 민간의 구분이 모호해 지고 있으며,
- 정보주체로서의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볼 때 분리보다는 통합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

○ 국제적으로도 공공·민간부문을 통합한 입법 및 관리·감독이 일반적인 추세

- 영국, 프랑스 등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
-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 사전예방기능과 사후구제기능의 통합 여부(참고자료2 참조)

○ 외국의 개인정보보호기구는 **사전예방기능**과 **사후구제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음

○ **사전예방기능**

-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신고·등록제, 정책입안 및 자문기능, 개인정보영향평가 등

○ **사후구제기능**

- 조정·합의, 조사·구제, 집행명령, 행정제재, 소송제기, 형사고발 등

※ **감독 · 규제 · 제재권**

○ **외국**의 사례 : 개인정보보호기구가 일정한 감독권(등록권 · 허가권 등), 단속권(감사권 · 직권조사 등) 및 제재권(행정명령 · 과태료 등) 보유

○ **한국**의 경우 : 행정부처가 행정적인 감독 · 단속 · 제재권 보유

예)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사업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조사 · 감독하여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태료 등 행정적 제재조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5조제3항 및 제67조)

▢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설치(참고자료1 참조)

○ 국제기준

- 유엔 개인정보보호가이드라인(1990),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지침(1995), 유럽평의회의 개인정보보호협약 추가의정서(2001), OECD 각료선언(1998) 등 국제기준에는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설치를 강조하고 있음

○ 외국의 경향

- 개인정보보호기구를 인권위에 설치하는 국가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독립기구로 설치하고 있음
- 호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기구를 당초 인권위에 설치하였다가 최근 별도 분리(2000.7월)하였는 바, 인권위에 개인정보보호기구를 설치하였던 국가도 개인정보보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분리하는 추세임

○ 미국의 경우

- 미국은 규제대상을 한정해 개별법으로 규율하고 있음
- 연방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 1974), 예산관리국의 정보수집에 관한 문서감축법(1980), 연방 데이터베이스의 비교 · 합성에 관한 컴퓨터연결 및 프라이버시보호법(1998), 케이블통신정책법(Cable Communication Policy Act 1984), 텔레커뮤니케이션법(Telecommunications Act, 1996), 금융서비스 근대화법 등

Ⅳ. 국회 계류중인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 비교 검토

□ 개인정보 보호기구의 설치 및 기능 비교(참고자료3 참조)

○ 기구 설치

개인정보 보호기구	이은영(안)	정성호(안)	노회찬(안)
공공·민간	통합	통합	통합
기구명칭	• **개인정보특별위원회(5인)** • 조정위원회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9인)**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15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9인)** • 지역개인정보보호위원회(광역)
설치	**국가인권위 소속**	독 립	독 립

○ 주요기능 비교

구분	기능별	이은영(안)	정성호(안)	노회찬(안)
사전예방기능	신고·등록제	×	△	○
	정책입안·자문	×	○	○
	사전영향평가제	○	×	○
사후구제기능	시정·징계(권고)	○	○	○
	조정·합의	○	○	△
	집행명령	×	×	○
	행정제재	△	×	○
	소송제기	×	×	○ (집단소송)
	형사고발	○	○	○

▢ 장단점 비교

◆ 노회찬 의원(안)

○ 주요내용

■ **기 구** : 독립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역개인정보보호위원회(광역)

■ **기 능**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고시, 지침, 가이드라인 제정
-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록
-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미이행시 중지권고), 국가기관과의 협의
- 결정(이의 미제기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판정·구제(권고), 고발 및 징계권고 등

○ 기대효과(장점)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별도의 독립된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준)사법적 결정기능과 규제위원회의 성격을 갖고 있어, 사전·사후적으로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보호업무 수행 가능
-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전등록 및 협의 등 상시적 감독을 통한 침해 예방 효과

○ 문제점(단점)

- 개인정보의 침해구제에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한 조정기능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나 '합의권고'외에는 조정 기능이 없음

※ 2004년도 개인정보침해신고 접수·처리현황(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접수 2,412건→분쟁조정위 이관 : 1,210건

◆ 정성호 의원(안)

○ 주요내용

■ 기 구 : 독립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기 능

- 개인정보관련 기본방침 설정(시책은 정부 및 지자체 수행)
- 판정·구제권고, 상담 및 조언
- 국가기관과의 협의
- 개인정보의 등록 등

○ 기대효과(장점)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별도의 독립된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전문성 확보 가능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정기능 활성화

○ 문제점(단점)

- 개인정보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이 없음
- 개인정보의 등록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이에 대한 세부사항, 미이행에 따른 제재기능이 없어 실효성 의문
- 독립기구의 설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설치 외에는 인권위 기능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약화되는 경우가 있음

◆ 이은영 의원(안)

○ 주요내용

■ 기 구 : 인권위에 개인정보특별위원회,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설치

■ 기 능

- 판정·구제권고, 조정, 개인정보영향평가는 인권위에서 수행
- 정책 및 규제기능은 현행대로 각 정부부처에서 수행

○ 기대효과(장점)

- 인권위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조사기능), 독립성, 효율성(예산 절감), 접근성 등의 이점을 살려 개인정보침해구제업무의 효과적 수행 가능
- 별도의 독립기구 설치에 따른 부담 최소화(예산, 인력, 시간 등)
- 이미 정부부처간 합의된 사항이므로 개인정보침해시정기구 단일화 과정 신속 진행 가능

○ 문제점(단점)

- 시정(집행)명령, 행정제재 등 강제적 구제수단 결여
- 개인정보 신고·등록제 등 사전예방 기능 미흡
- 인권위 업무 과중(민간부문 개인정보침해진정사건 처리건수 : 연간 약 3천여건) ⇒ 적정 소요인원 및 예산 확보 필요
- 개인정보보호기구를 별도의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국제적인 추세에 역행

《이은영 의원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 작성경위》

○ 2003.5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됨에 따라 정부의 국정과제회의시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추진 결정('03.10월)

⇒ 정부혁신위에서 본격추진

○ 정책토론회 및 포럼 등 개최('04.4-6월)

○ 관련 정부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시안 마련('04.11월)

○ 당정협의('04.12.9, 인권위원장 참석)

- 열린우리당의 당론으로 확정, 이은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기로 합의
- 인권위 김창국 전 위원장은 본 안에 대하여 수용의사를 표시

○ 이은영 의원 발의('05.2.2)

- 당론으로 확정하지 못하고 27인의 의원 찬성으로 발의
- 한편, 정성호 의원이 독립된 개인정보보호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별도 발의(11인 찬성)

Ⅵ. 검토 의견

《제1안》

【주요내용】

◇ 개인정보침해시정기능을 인권위로 일원화

○ 정책권고, 진정조사·구제(권고), 조정, 개인정보영향평가 등은 인권위 수행

⇒ 정보통신부(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민간부문 개인정보침해 구제업무 인권위 이관

○ 정책 및 규제기능 등은 현행대로 정부부처에서 수행

◇ 관련법 제·개정

○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

⇒ **이은영 의원(안) 수정 보완**(신고·등록제 등 추가)

○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 개정 법조문 수정·보완(정의, 조사대상 등)

□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의견

○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인권위 수행여부 논의 필요

- 인권위는 독립성 확보나 예산절약의 차원에서 장점이 있으나, 개인정보의 감독 및 권리구제의 실효성 측면에서는 전문성 부족 등 한계
- 외국의 주요 국가들은 거의 대부분 국가인권기구와 별도로 독립적인 개인정보감독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민간부분의 경우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보호진흥원(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의 업무와의 중복문제 해소방안 강구 필요

□ 정부부처 의견(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등)

○ 별도의 독립된 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은 그 효과와 필요성에 비해 시간적·경제적인 문제가 있어 적절치 않음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 및 규제기능은 현행대로 정부부처에서 담당함이 타당(특히, 정책기능은 강화할 필요성 강조)

□ 인권단체 및 학계의 의견

○ 개인정보보호기구를 민간·공공부문을 통합하여 독립된 개인정보보호기구를 신설하여야 하는 데는 모두 공감

○ 인권단체 및 학계 등 관련 전문가들은 인권위에 개인정보침해시정기구의 설치에 반대 입장

- 새로운 감독기구 설립에 따른 예산 및 인력 충원 부담은 이해하나,
-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실효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상시적 데이터베이스의 행정적 관리·감독, 실질적 집행력, 전문성 등의 요건을 인권위가 담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진보네트워크 등 7개 인권단체)는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보호라는 인권적 관점에서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설립을 인권위가 지지할 것을 촉구('05.3.30)

□ **검토 의견**

○ 긍정적인 측면

- 인권위가 개인정보침해시정기능을 사적 영역에까지 확대함으로써 종합적인 권리구제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 인권위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조사기능), 독립성, 효율성(예산 절감), 접근성 등의 이점을 살려 권리구제업무의 효과적 수행 가능하며,

- 차후 개인의 유전자정보, 생체정보보호 등의 문제 발생시 개인정보보호 측면뿐만 아니라 인격권, 행복추구권 등 다른 인권의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며, 차별에 대하여도 종합적인 접근이 가능함
- 특히, 인권위 권고의 수용율이 매우 높고(90% 이상), 개인정보침해 구제업무가 주로 조정으로 해결된 다는 점에서 인권위에 개인정보침해시정기구의 설치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음
- 이 안은 정부내 사전협의를 거쳐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별도의 협의절차 없이 신속하게 추진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음

○ 부정적인 측면

- 인권위는 옴부즈만으로서의 권고기능만 갖고 있어, 시정(집행)명령, 행정제재 등 실효적 구제수단 결여되어 있고,
- 사전 신고·등록 등 상시적인 관리감독기능이 부재하여 사전예방기능 미흡하며, 신용, 정보통신 등 민간부문, 보안기술 등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곤란한 점 등 문제점이 있음
- 또한, 인권위 성격(옴부즈만으로서의 권고기능)상 정책 및 규제기능은 정부에서 전담할 수밖에 없으므로 인권단체 및 학계 등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 특히, 개인정보침해시정기구를 인권위로 일원화한다는 것은 정보통신부의 민간부문에 대한 진정 조사·처리업무를 인권위로 이관하는 것에 불과한 반면, 향후 독립된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설립을 실질적으로 저해할 우려가 있음

※ 관련법 수정·보완 사항

○ 이은영 의원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

- 데이터베이스 사전등록제,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고자하는 경우나 개인정보를 통합하고자하는 경우의 협의(신고) 의무의 도입 등

○ 이은영 의원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 개인정보특별위원회의 설치, 개인정보침해의 조사·구제업무 추가(제19조) 및 조사대상 포함(제30조) 등 구체적인 조문화에 있어 수정·보완 필요

《제2안》

【주요내용】

◇ 공공·민간부분을 통합한 독립된 개인정보보호기구 설치

○ 사전 예방기능

- 개인정보 신고·등록제, 정책 입안 및 자문, 사전영향평가제 등

○ 사후 구제기능

- 진정조사·구제, 조정·합의, 집행(시정)명령, 행정제재, 소송제기, 형사고발 및 징계권고 등

※ 인권위의 역할

- 법령·정책 등 권고(정부, 개인정보보호기구, 공·사단체)
- 제한된 범위내에서 진정조사·구제(권고)

◇ 관련법 제·개정

○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 : 노회찬 의원(안)** 일부 수정 보완

⇒ 독립된 개인정보보호기구에 조정기능 부여

○ **국가인권위원회법개정(안)** : 개정 불요

□ 관계기관·단체 등 의견

○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준)사법적 기능과 규제위원회의 성격을 담보할 수 있어, 사전·사후적으로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수행이 가능함에 따라 인권단체 및 학계 등 지지

○ 정부에서는 반대 입장(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등)

- 별도의 독립된 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은 그 효과와 필요성에 비해 시간적·경제적인 문제가 있어 적절치 않음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 및 규제기능은 현행대로 정부부처에서 담당함이 타당(특히, 정책기능은 강화할 필요성 강조)

□ 검토 의견

○ 긍정적인 측면

-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전문성, 중요성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보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함

<전문성>

-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개인정보침해가 다양하고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전담기관이 필요
- 현 인권위의 체제로서는 전문성 확보에 한계(인권위원은 국회, 대통령 및 대법원장의 선출 또는 지명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

<사전예방 및 상시적 관리·감독체제의 중요성>

- 개인정보의 경우 사후구제보다는 사전예방기능이 중요하므로 개인정보의 신고·등록제 등, 항시적인 관리·감독 등이 중요
- 인권위는 옴부즈만으로서의 사후구제 위주의 권고기능이 그 핵심이므로, 행정적 규제기능을 수행할 경우 정체성의 문제 발생

- 특히, 독립된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설치는 국제적 추세임

- 유엔 개인정보보호가이드라인(1990) 등 국제기준에는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설치를 강조하고 있음
- 외국의 경우 개인정보보호기구를 인권위에 설치하는 국가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독립기구로 설치하고 있음

○ 부정적인 측면

- 정부혁신위의 당초안도 독립기구를 설립하는 것이었으나, 정부내 의견조율이 되지 않아 이은영 의원안으로 수정한 것을 고려해 볼 때, 독립기구의 설립을 위한 정부내 의견조율 등 준비가 필요함
- 인권위의 업무중 정보인권만 제외할 경우 종합적 권리구제기구로서의 인권위의 지위 저하 우려

[참고자료 1]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설치 관련 외국사례

국가	기관명	주요기능	비고
영국	정보보호청(독립)	◦ 사전신고 · 등록제 ◦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 감사 ◦ 화해, 조정 ◦ 이행고지서 발부 ◦ 기타 실무규약 제정, 특정유형의 소송지원, 기술자문, 정보제공, 교육 · 홍보 등	◦ 개인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 1988) ◦ 공공 · 민간 포괄
프랑스	국가정보자유위원회(독립)	◦ 사전신고 · 등록제 ◦ 공공기관에 대한 정책 자문 ◦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감시 · 감독 ◦ 합의, 조정, 시정권고 ◦ 형사고발, 제소 ◦ 기타 관련 규칙 제정, 교육 및 홍보등	◦ 정보처리 · 축적 및 자유에 관한 법률(1978) ◦ 공공 · 민간 포괄
독일	연방개인정보보호청(공공) 정보감독청(민간)	◦ 사전신고 · 등록제 ◦ 조사 및 시정권고 ◦ 정보감독청의 경우 시정명령권, 과태료 부과, 개인정보책임자 해임요구 등 권한	◦ 연방개인정보보호법(1977) ◦ 공공 · 민간 포괄
호주	Privacy Commissioner (독립)	◦ 조정 · 화해, 시정권고 ◦ 공식적인 결정(손해배상명령, 시정명령, 원상회복, 금지명령, 사과명령) ◦ 프라이버시 규약의 심사와 승인 ◦ 기타 자문, 교육 및 홍보 등	◦ 연방프라이버시법(1988) ◦ 공공 · 민간 포괄
뉴질랜드	Privacy Commissioner (독립)	◦ 조정 · 화해 ◦ 시정의 권고 ◦ 인권법원심사청구 안내, 인권소송담당관 이첩 등	◦ 프라이버시위원회법(1991) ◦ 공공 · 민간 포괄 ◦ 별도로 인권법원 등이 있음
미국	예산관리국	◦ 연방행정기관의 개인정보	◦ 프라이버시법(1974)
	연방거래위원회(독립)	◦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성격)	◦ 연방거래위원회법 등

[참고자료 2]

개인정보보호기구의 기능관련 외국사례

구 분	외국의 입법 예
대 상	○ 민간·공공부문 모두를 포괄하는 통합적 입법 및 관리·감독이 국제적인 추세임(호주, 벨기에, 프랑스, 영국, 뉴질랜드 등) - 독일의 경우 민간·공공을 아우르는 통합입법 예를 취하고 있으나 감독기구는 이원화 하고 있음
사전예방	○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신고·등록제(항시적 감독기능) ○ 정책입안 및 자문기능 - 예: 캐나다의 프라이버시 진단 툴 개발, 의회에 관련 사항 특별보고 권한, 민간기관의 자율규제규범인 실무규약에 대한 협의권 (뉴질랜드의 경우 이렇게 결정된 실무 규약은 법적 구속력을 가짐) ○사전영향평가제
조사기능	○ 직권조사 ○ 진정접수에 의한 조사
사후구제	○ 조정·합의 ○ 집행명령 및 행정제재 - 호주의 경우 공식적인 결정(formal determination)을 통해 손해배상명령, 시정명령, 원상회복, 금지명령, 사과명령 → 피신청인이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이행심사 청구 - 독일의 경우 사전신고의무 위반 등 법상 일정 의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이행하지 않는 자는 과태료 처분 ○ 소제기·형사고발 - 영국·뉴질랜드의 경우 개인정보보보호기구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불복절차를 두고 있고, 개인정보처리기관이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결정한 경우 형사범죄 성립

[참고자료 3]

국회 계류중인 개인정보

	이은영 안	노회찬 안	정상호 안
대상	공공 · 민간	공공 · 민간	공공 · 민간
기구 형태	**국가인권위원회 내 설치**	**제3의 독립기구 신설**	**제3의 독립기구 신설**
구성	5명의 정보위원	9명(위원장1인상임위원3인을 포함)	9명 (위원장1인상임위원3인을 포함)
사전 예방 기능	**-개인정보영향평가** *공공기관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취급자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비밀로서 분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고시, 지침, 가이드라인의 제정**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등록** *데이터베이스 결합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를 보고 **-개인정보 사전 영향평가** *1.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새로 구축되는 경우 2.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새로운 개인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정보주체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경우 3. 2개 이상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통합 또는 연동되는 경우 ***의무적 사전 영향평가** 1.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법령 ·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2.개인정보 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 기술이 도입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기본 방침의 제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개인정보취급자가 강구하여야할 ▲개인정보시책 및 조치▲고충의 원활한 처리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등록** **-국가기관과의 협의**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 ·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3.노동자 개인정보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용자의 정보처리에 대해 해당 사업장의 노동조합 또는 그 상급단체가 영향평가를 요청한 경우 **- 국가기관과의 협의**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제·개정시	
조사	-개인정보침해 조사구제 (인권위 조사기능과 유사)	-개인정보침해 조사구제 (인권위 조사기능과 유사)	-개인정보침해 조사구제 (인권위 조사기능과 유사)
사후 구제	**-시정권고,** · 개인정보 침해행위의 중지, 개인정보 처리 및 이용 행위의 일시적 정지 및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침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권고를 받은 개인정보취급자에 관하여는 **인권위법 제25조제2항 내지 제4항 준용** **- 고발 및 징계권고** · 권고를 받은 개인정보취급자는 **인권위법 제45조제3항·4항 및 제46조 준용**	-시정 권고, 고발 및 징계권고 (인권위 기능과 유사)	-개인정보침해행위의 중지 및 시정 조치 권고
조정	-조정위원회 · 인권위법 제41조 준용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가배상법의 적용을 받는 분쟁으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를 거친 경우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봄

기타	-기구 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설치▲침해신고의 접수▲상담▲개인정보이용 및 보호에관한 홍보등	-개인정보의 삭제, 수정, 이용 중단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의 결정** ·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을 송달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위원회의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음	
	CCTV 관련 조항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개인정보취급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담당자를 지정 **-입증책임의 전환** ·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된 때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과실이 없음을 입증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를 등록한 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임명 · 개인정보처리 및 보호 원칙의 준수 여부에 대한 일차적 감독 · 정기적 감사 실시후 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보고 -집단소송제 ·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자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표당사자가 되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입증책임의 전환** · 개인정보보유자가 법률에 반하여 정보주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당사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유자는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음 -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관업무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규칙이나 고시를 제정**할 수 있음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폐지 -정보통신망의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중 제4장(제22조 내지 제40조)의 삭제